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91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김희정·박준태·서일준

이성권 · 이종배 · 최수진

권성동 • 백종헌 • 김상욱

임종득 · 김종양 · 강선영

곽규택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」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별표 1 제24호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 안」(의안번호 제369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24. 「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